

### 제품소개

특타이트 프라이머 Gold는 일액형 비-CFC 용제형 표면 경화촉진제이다. 이제품은 특타이트 순간 접착제의 경화속도를 촉진하도록 설계되었다. 높은 가연성이다.

### 일반적 용도

프라이머골드는 특타이트 순간접착제의 경화속도를 촉진하고자 하는곳에 사용한다. 접착전이나 후에 도포할수있다. 하지만 특별히 빠른 고착시간을 갖도록 순간 접착제에다 나중에 도포하는 것이 적당하다. 일반적인 사용예로는 와이어나 코일을 PCB에 고정, 조질 부품의 탬퍼프루빙, 옛지 가이드와 판넬 스티프너등이 있다.

### 용액 물성

주성분	일반적인값
용제	유기 액셀러레이터
외관	아세톤*
비중 @ 25°C	투명, 호박색
점도 @ 20°C, mPa.s	0.79
인화점 (TCC), °C	0.4
TLV, (ACGIH), ppm	-17 (높은 가연성)
건조시간 @ 20°C, 초	750
가사시간, 분	<30
	1 max.

- \* 아세톤은 환경친화성 용제이다.
- 아세톤은 오존 파괴성이 없다.
- 독일WGK, 영역 zero에 부합한다.

### 일반적 특성

프라이머골드를 사용했을때 고착시간과 경화속도는 사용접착제와 접착 재질에 따라 다르다.

### 일반주의사항

이제품의 안전한 취급사항에 대해서는 물질안전자료(MSDS)를 참조한다.

### 취급시 주의사항

#### 주의

어떠한 사항에서라도 경화제와 접착제를 액상으로 직접 혼합하지 않는다.

경화제는 높은 가연성에 적합한 방법과 지역의 규정에 부합되게 취급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불꽃이나 불꽃이 일어날수 있는 어떠한 전기장비와 프라이머나 프라이머의 증기와와의 접촉을 금해야 한다. 용제는 일부 플라스틱이나 코팅면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 사용전에 그러한 재질과 프라이머의 호환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피부와 눈과의 접촉을 피한다.

배기가 잘되는 곳에서 사용한다.

프라이머 사용시 금연한다

### 사용 요령

도포후 경화제 처리 :

1. 접착하거나 고정할 부위에 특타이트 순간접착제를 도포한다.
- 2.접착제위에 스프레이나 방울로 경화제를 도포한다.  
접착제 한방울에 경화제 한방울이 적당하다.

표면경화제 처리 :

1. 접착할 한면에 스프레이, 브러쉬 혹은 방울로 경화제를 도포한다. 표면에 포함된 제거 가능한 불순물은 닦아내거나 세척하여 없앤다.
2. 표면이 완전히 건조되도록 용제가 증발할 시간을 둔다. (약 30초)
3. 특타이트 순간접착제를 건조지후 늦어도 45초이내에 도포한다.
4. 경화제 도포시간과 접착제 도포시간의 간격이 45초 이상이면 경화제를 다시 도포할 필요가 있다.

### 보관방법

이경화제는 높은 가연성으로 분류되므로 적합한 방법과 지역의 규정에 적합하게 저장해야 한다. 산화제나 연소물질 가까이에 두지 않는다. 경화제는 빛에 민감하므로 용기를 사용하지 않을때는 어두운곳에 보관한다.

장소는 다른언급이 없으면 8°C - 28°C사이의 온도에서 밀폐용기를 건냉소에서 보관하는것이 제일 이상적이다. 최적의 보관상태는 위에 언급한 온도범위의 중간이하로 보관하는 것이다. 사용된 제품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후의 잔량은 원용기에 담지말아야한다. 기타 문의 사항은 한국특타이트에 문의한다.

### 주의

본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단지 참고용으로 제공되는것이지만 매우 신뢰성 있는것으로 판단된다. 당사는 당사가 통제할수없는 방법에 의해 얻어진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않는다. 본자료에 언급된 접착방법이 사용자의 용도에 적합한지를 결정하고 이의 취급과 사용에 수반되는 위험으로부터 재산및 신체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는것은 사용자의 책임이다. 특타이트사는 특타이트사의 제품을 사용하거나 판매후 발생하는 특정목적에 적당하다고 표현되는 사항등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특타이트사는 제품사용시 발생한 어떤종류의 피해 및 손해등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본자료에 있는 각종공정이나 합성물에 대한 언급은 이와같은 공정이나 합성물에 대해 타인이 소유한 특허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거나 또는 특타이트사의 특허권에의거 사용을 허가하는 의미로 해석하지 말아야한다. 본제품을 반복 사용하기전에 사용예정자가 본자료를 지침으로하여 원하는 용도로 시험할것을 권장한다. 본제품은 하나 또는 그이상의 미국이나 외국의 특허권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